

<b>웅지세무대학교</b> <b>산 학 협 력 단</b>	<b>산 학 협 력 단</b> <b>운 영 규 정</b>	문서번호	8-1-02(N)-0
		제정일자	05.04.04
		최근개정	15.02.16
		주관부서	산학협력단
		홈페이지공개	공 개

웅지세무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대학 정관과 본 대학 산학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정관의 규정에 따라 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본 대학의 산학협력사업과 재정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부속기관과 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의 업무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기획·조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학협력사업 및 재정지원사업의 총괄
2. 산학협력사업 및 재정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 및 조정
3. 산학협력사업 및 재정지원사업 기관의 행정지원
4. 산학협력 계약체결 및 이행,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권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의 업무 관리
5. 교외연구비 지급 및 관리
6. 부설연구소 평가 및 지원
7.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

## 제2장 조직

**제4조(단장의 자격)** 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또는 부참사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4.05.01.>

~~제5조 삭제 <2007.03.01.>~~

**제6조(하부조직)** ① 산학협력단 산하에 기술지원센터, 산학연컨소시엄사업단 및 총장이 지정하는 연구소를 두며, 각각의 사무를 관장하는 소장을 둘 수 있다.

② 협력단에는 산학협력부를 두며,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 ③ 산학협력부 업무를 위하여 직원, 조교와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운영기관에 임명된 교직원은 산학협력부 소속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 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산학협력단장, 교학처장, 대외협력처장, 사무처장, 대학시설관리단장을 포함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개정 2014.05.01., 2015.02.16.>

③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단 운영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 및 재정지원사업 신청·평가 및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학협력단 및 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5. 교외연구비, 간접연구경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소집 및 의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개정 2014.05.01.>

##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10조(수입)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 계약에 의한 수익금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이자수입
6.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등이 활용하는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실습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7. 기타 산학협력에 의한 수익금

**제11조(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또는 인건비 <개정 2014.05.01.>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 시설 및 운영의 지원
4. 수입(기부금 포함)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며, 교직원 수입 기여자의 보상금은 산단수익의 15% 이내로 하며, 기부금은 기부총액의 15% 이내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집행한다. 단, 외부인이 수입기여자인 경우는 산단수익의 40%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배분율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약하에 조정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4.05.01., 2015.02.16.>
5.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6.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7. 특허정보 조사,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유지 등을 위한 경비
8. 기타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12조(재무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4.05.01.>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2. 예산 외 채무의 부담
3. 채권의 포기

**제13조(회계처리)** ① 산학협력단은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 자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회계처리 기준 및 재무제표 양식 등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05.01.>

② 산학협력단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다만, 소액지출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14조(예산 및 결산보고)** 산학협력단의 운영계획안과 예산안을 작성·예결산 자문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며,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 산학협력단의 재정상황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대학 소속 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규정변경)**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5.01.>

부 칙 <1판-제정/시행 2005.04.04.>

이 규정은 산학협력단 정관 등록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판-개정/시행 2007.03.01.>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판-개정/시행 2014.05.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교원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개정한다.

② 기관장 명칭 또는 운영위원회 정원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9조, 제12조, 제17조 "학장"에서 "총장"으로 개정한다.

제7조제2항 "10인"에서 "5인"으로 개정한다.

③ 기타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산학협력단의관리·운영비 또는 인건비"로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수입(기부금 포함)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며, (내·외부인원포함) 수입 기여자의 보상금은 산단수익의 15% 이내로 하며, 기부금은 기부총액의 15% 이내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집행한다로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을 삭제한다.

부 칙 <4판-개정/시행 2015.0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1. 제7조(운영위원회)제2항 "당연직 위원인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인 산학협력단장, 교학처장, 대학시설관리단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으로 개정한다.

2. 제11조제2호의 "(내·외부인포함)"(교직원)으로 개정하며, "단, 외부인이 수입기여자인 경우는 산단수익의 40%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배분율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약에 조정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지급할 수 있다."로 신설한다.